



환경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공동회의 결과
과 통보

1. 환경부 토양지하수과-182('08.1.18)호 관련입니다.
2.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사업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공동회의 결과를 불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회의 결과에 따른 양해각서 체결 가능 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 유관기관 공동회의 개최 결과 1부.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국방부장관(환경보전팀장), 경기도지사(특별대책지역과장), 강원도지사(환경정책과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사무총장), 녹색연합 공동 대표(녹색사회국장)

전결 01/29

환경사무관 **전권호**

토양지하수과장

협조자

시행 토양지하수과-284

(2008.01.29.)

접수

우 경기 과천시 중앙동 환경부 상하수도국 토양지하수과 /

전화 02-2110-6763

전송

/ jeon0119@me.go.kr

/ 비공개(8)

『(가칭)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사업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공 동 회 의 개 최 결 과

□ 목 적

-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을 위한 추진경과 보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를 위한 양해각서(안)” 및 운영규정(안)에 대한 유관기관별 의견 수렴 및 향후 일정 협의

□ 일시 및 장소

- 일시 : '08. 1. 24(목), 14:00 ~ 17:00
- 장소 : 과천시민회관 2층 세미나실

□ 참석자 : 총 14명

순번	기 관	참 석 자		구분
1	환 경 부	상하수도국	윤종수 상하수도국장	중앙정부
		토양지하수과	정종선 과장, 전권호 사무관	
		군부대환경대책팀	김상호 팀장	
2	국 방 부	환경보전팀	유동준 서기관, 이균 주무관	중앙정부
3	광역지자체	경기도청 특별대책지역과	한배수 과장, 정영균 주무관	지방정부
		강원도청 환경정책과	조규석 과장, 장석 주무관	
4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처장, 김유 사무처장	NGO
		녹색연합	서재철 국장, 황민혁 간사	

□ 진행내용

일 시	내 용	진 행
14:00~14:05	개회	사회자
14:05~14:10	인사말	상하수도국장
14:10~14:30	추진경과, 양해각서 및 운영규정 설명	토양지하수과장
14:30~16:30	토론 및 의견수렴	토양지하수과장
16:30 ~	폐회	사회자

□ 회의 결과

-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를 위한 양해각서(안)” 및 “운영규정(안)”에 대한 토의 및 수정을 통한 초안 작성
- 양해각서 서명을 위한 일정 협의
 - 유관기관별 일정을 감안하여 2월 3주(‘08.2.11~15)중에 선정
 - 양해각서 서명 후 공동기자 회견 또는 언론보도 실시

- [별첨] 1.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를 위한 양해각서(안) 1부.
2.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규정(안) 1부.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를 위한 양해각서(안)

환경부, 국방부, 경기도, 강원도,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이하 “유관기관 협의체” 라 함)은 상호존중과 책임 및 신뢰를 바탕으로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사업의 철저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며,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사항을 합의한다.

- 하나. 유관기관 협의체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사업 추진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 둘. 유관기관 협의체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 셋. 본 협약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협력분야, 임무분담, 권한 및 의무, 의사 결정 방식 등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추진한다.

본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6부를 작성하여 유관기관이 서명한 후 각 1부씩을 보관한다.

2008년 월 일

환경부
상하수도국장 윤종수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김광우

경기도
도시환경국장 정용배

강원도
환경정책관 안병헌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안병욱

녹색연합
사무처장 최승국

—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사업> —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규정(안)

2008. 1.

유관기관 협의체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사업(이하 “정화사업”이라 한다)의 추진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화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공유
2. 정화사업 대상범위, 수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정화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요구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정화사업 대상 지역의 사후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화사업과 관련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체의 구성원은 대표, 위원 및 실무위원, 특별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표(6인)

- 가. 환경부 상하수도국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 나. 경기도 도시환경국장, 강원도 환경정책관
- 다.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녹색연합 사무처장

2. 위원(6인)

- 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 국방부 환경보전팀장
- 나. 경기도 특별대책지역과장, 강원도 환경정책과장
- 다. 경기 환경운동연합 처장, 녹색연합 녹색사회 국장

3. 실무위원(6인)

- 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담당, 국방부 환경보전팀 담당
- 나. 경기도 특별대책지역과 담당, 강원도 환경정책과 담당
- 다. 환경운동연합 담당, 녹색연합 담당

4. 특별실무위원(대상지역 사안 발생시 참여)

가. 정화사업 대상 지역 지자체 및 시민단체 담당자

나. 기술자문위원 및 정화사업 위·수탁기관

다. 지역개발시행자 및 지역주민 대표

5. 특별실무위원은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따라 2인 이상 위원
의 추천을 받거나 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제4조(대표 및 의장) ①대표는 각 유관기관을 대표하여 협의체 구성의 권
한과 책임을 지며 필요한 활동을 지원한다.

②협의체 의장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으로 한다.

제5조(의장의 직무 및 임기) ①의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통할한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
명한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분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④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
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회의의 의사결정은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정화사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2.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
3. 기타 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

②실무위원회 위원장은 1인을 두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담당으로 한다.

제8조(안건의 제출) ①협의회 소속 각 위원 및 각 위원이 소속된 단체에서는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정 7일전까지 실무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협의회 개최 5일전에 위원들에게 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①협의회는 협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기타 필요시 의장이 지정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결정사항의 성실반영) ①협의회 위원들은 회의 결과에 따른 합의사항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에 반영하거나 성실이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통보받은 조치사항을 위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1조(성실 의무) ①위원은 협의회 활동에 성실이 임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협의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의장은 제6조에 따라 협의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9조에 의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1. 본 규정은 유관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규정의 효력 발생을 증명하기 위하여 규정 6부를 작성하여 유관기관이 서명한 후 각 1부씩을 보관한다.

2008년 월 일

환 경 부
토양지하수과장 정종선

국 방 부
환경보전팀 유동준

경 기 도
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

강 원 도
환경정책과장 조규석

환 경 운 동 연 합
경기사무처장 안명균

녹 색 연 합
녹색사회국장 서재철